



일본 정부와 여당의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초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일본

김명중 (일본 닛세이초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일본 정부 및 여당은 2012년 1월 6일 사회보장개혁본부에서 소비세를 2014년에 8%, 2015년에 10%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 및 세제의 일체 개혁에 대한 초안을 결정하였다. 노다 수상은 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12년 3월 말에 소비세 증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사회보장과 세제에 대한 일체 개혁은 2010년 10월에 정부 및 여당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가 설치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유식자검토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2010년 12월 14일 사회보장 개혁의 추진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후 11회에 걸쳐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가 열렸으며, 정부 및 여당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의 회합과 관련하여 5개 대신(장관) 회합 등을 거친 후에 개혁안 초안이 발표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라고 하는 고용형태의 변화, 가족형태 및 지역 기반의 변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한 빈곤의 발생과 격차의 확대, 세대 간의 불공평, 고독 및 고립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의 출생률은 1.39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의

1.26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 경향에 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령화율¹⁾은 23.1%로 오는 2020년에는 30% 전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약 3명 중 1명 이상²⁾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도 확대되어 2008년도의 지니계수는 0.376³⁾에 이르렀다. 빈곤율은 1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2011년 9월의 생활 보호 수급자 수는 206.5만 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또한 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로는 재정적자가 점점 확대됨과 동시에 국제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위기감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세제 개혁을 가속화시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 정부 및 여당의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미래에 대한 투자(어린이 및 육아지원) 강화

모든 어린이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어린이와 육아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등의 양적 확충정책과 함께, 유치원과 보육원을 일체화하는 등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과 관련된 영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 주체인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한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제근본개혁

1) 2010년 10월 1일 시점.

2) 2011년 비정규직 비율 35.4%.

3) 2008년도의 당초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532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금과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한 재분배정책 이후의 지니계수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도의 0.387보다 다소 낮아졌다.

과 함께 2012년 통상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료 및 간호서비스 보장의 강화

의료 및 간호서비스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의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체제를 효율화 및 중점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인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의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정책을 확대하는 등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을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단위화.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확대
후생연금의 적용을 단시간 근로자에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적용도 확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2년 통상국회에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
- 장기 고액 의료의 고액 요양비 수정과 급부 중점화에 대한 검토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액 의료비제도에 연간 상한액을 설정. 연봉 300만 엔 이하인 자를 특별히 배려.
- 고령자의료제도의 개정
각 건강보험에서 고령자의료제도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각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총 보수에 따르는 부담으로 수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
또한 원칙적으로 환자 부담이 2할이지만 매년도 약 2,000억 엔의 예산 조치에 의해 환자 부담이 1할로 동결되어 있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도 세대 간의 공평을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
- 국민건강보험의 국고보조 개정
보험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국고보조를 개정.
- 개호보험의 제1호 보험료의 저소득자 경감정책을 강화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보험료 수준의 상승과 소비세 인상에 의한 저소득자 대책강화

를 위해 공비를 투입하여 65세 이상 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정책을 강화.

- 개호납부금의 총 보수제 도입 등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개호납부금의 부담을 의료보험자의 총 보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 후발의약품의 사용촉진, 의약품의 환자 부담 수정 등

- 기타 효율적이고 고기능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추진

- 종합합산제도를 창설

세제 및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자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 이를 위해 제도 단위가 아닌 의료·개호·보육 등에 관한 자기부담 합계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를 창설.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세제관련 번호제도(15페이지 세제개혁 기타 부분 참고) 등 정보연계 기반의 도입이 전제이므로 2015년도 이후의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

- 난병대책

난병환자의 장기적이고 중도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사회 전체가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비 조성에 대해서 법제화를 시야에 넣는 등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지원제도의 구축을 지향.

연금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시킨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와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실시.

①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방식)

-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제도에 가입, 소득이 같으면 보험료와 급부도 동일.
- 보험료는 15% 정도

- 납부한 보험료를 기록상 적립하여 가상 이자를 부여하고, 그 합계액을 연간 지급개시 시의 평균 여명 등으로 나누어 매년 연금액을 산출.

② 최저보장연금(재원은 세금)

- 최저보장연금의 최고 급여액을 7만 엔(현재가격)으로 설정
- 생애 평균 연간 수입을 기준(보험료 납부액)으로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고,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경감된 급여를 지급.
- 모든 수급자가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합쳐 최저 약 7만 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현행 제도의개선

① 기초연금 국고부담 2분의 1을 영구적으로 실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국고 부담의 2분의 1을 영구적으로 실시.

-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세 재원에 의한 국고 부담의 2분의 1을 영구화
- 2012년도의 기초연금을 급부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국고 부담의 비율은 세출 예산(36.5%)과 연금교부국채(가칭)에 의해 2분의 1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법안을 2012년 통상국회에 제출.
- 2013년도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검토.

② 최저보장기능의 강화

연금제도의 최저보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등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실시한다.

- 저소득자에 대한 가산
저소득자에 중점을 둔 노령기초연금에 대한 일정 가산을 실시. 단 보험료 납부의 인센티브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
- 장애기초연금 등을 가산
노령기초연금의 저소득자에 대한 가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의 소득보장 관

점에서 장애 및 노령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일정 가산을 실시.

- 수급자격 기간을 단축

무연금자로 취급된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급자격 기간을 현재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③ 고소득자의 연금급여를 개정

최저보장기능의 강화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경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창설.

④ 물가슬라이드를 적용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연금 급여액을 해소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슬라이드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법에 의해 연금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보다 2.5%나 높은 수준의 급여액이 지급된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검토. 현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본래 수준대로 삭감하여, 연금 재정의 부하를 경감하고 현역 세대에게 지급될 장래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할 방침. 과다 지급된 연금급여액을 2012~2014년까지 3년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실시.

⑤ 산후기간 중의 보험료 부담 면제

차세대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육아휴업 기간에 추가적으로 산후후 휴가기간 중의 연금보험료를 면제. 면제 기간은 장래 연금급여액의 산정에 반영.

⑥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적용확대

샐러리맨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기업의 영향에 대한 배려 등 구체적 제도 설계를 검토. 적용확대가 근로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⑦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 전체의 공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제연금 제도를 후생연금제도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기본으로 샐러리맨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일원화.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보험료율과 급여 내용을 민간 샐러리맨과 동일화.

⑧ 제3호 피보험자제도의 수정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평감⁴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 새로운 연금제도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⑨ 거시경제슬라이드를 검토

디플레 경제하에서 현행 거시경제슬라이드 방법에 의한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한다는 관점에서, 디플레 경제하의 거시경제슬라이드의 방향성의 수정을 검토.

⑩ 재직노령연금의 수정

근로의욕을 억제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60세 전반의 고연령자와 관련된 재직노령연금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하는 한도액을 인상하는 수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⑪ 표준보수 상한을 수정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후생연금의 상한을 건강보험제도를 참고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⑫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

연금급여의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고령자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⑬ 업무 운영의 효율화

현행 연금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연금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 .

⑭ 기타

유족기초연금이 모자가정에는 지급되는 반면, 부자가정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지

4) 제3호 피보험자(소득이 없거나 일정수준 미만인 배우자)의 보험료는 연금제도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셀러리맨, 공무원 등) 전체가 부담하고 있다. 즉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셀러리맨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셀러리맨의 배우자, 즉 제3호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셀러리맨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제3호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배우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요건의 판정 기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세입청의 창설과 함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취로촉진, 양질의 노동(decent work) 및 격차 대응의 강화

① 고령자고용대책, 유기근로계약, 파트타임 근로대책, 고용보험제도

- 고령자고용대책에 대해서는 고용과 연금을 확실히 연결시켜, 소득이 없는 고령자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고용제도와 관련된 기준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
- 유기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유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
- 파트타임 근로대책에 대해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균등 및 균형대우의 확보와 촉진, 통상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
-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려운 고용 정세와 경기 하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

② 종합적 비전 및 청년층 고용대책

- 상기의 유기계약근로와 파트타임 근로대책에 대해서 논의된 성과를 참고로 비정규 근로자의 공정한 처우 확보에 횡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비전을 연도 내에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
- 청년층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대학생 등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환경을 고려하여, 잡 서포터(job supporter)에 의한 대학에의 출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연도 말 시점의 미내정자에 대해서는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 전원 등록시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맨투맨 지원을 철저히 실시. 학생의 눈높이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키 위해 노력.

빈곤 및 격차 대책의 강화

① 사회보장제도의 저소득자 대책을 강화

소비세 수입은 전액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에 대한 조치로, 다음 조치를 ②, ③의 조치와 병행하여 강구하고, 사회보장급부 등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

- 생활보호기준, 각종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물가슬라이드 등의 조치에 의해 소비세 인상에 의한 영향분을 수당액에 반영.
-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장기능의 강화로 가산조치를 실시.
- 의료 및 개호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보험료, 개호보험 제1호 피보험자 중 저소득자의 보험료 경감조치 확충 등에 의해 부담경감 조치를 실시.
- 장기 후기의료의 고액 요양비 수정에 대해서 검토.
- 사회보장제도를 횡단하는 저소득자 부담경감책으로 종합합산제도의 창설을 검토.

②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후생연금의 적용을 확대

③ 다층적 안전망의 구축 및 생활보호제도의 수정

- 생계곤란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

제2의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구직자지원제도와 함께 다음 대책을 추진한다.

- ⇒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중기 플랜을 책정.
- ⇒ 생계곤란자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지원서비스를 체계화, 민간의 생활지원기관(NPO, 사회복지법인 등)의 육성 및 보급, 다양한 취로기회 등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정비를 포함해 검토.

- 생활보호제도의 수정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조성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생활보호제도의 수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

의료 혁신

- 의료 및 간호 분야는 커다란 잠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 고용을 창출하며,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해 건강 분야를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디스플레이로부터 벗어나 경제성장으로의 연결이 가능.
- 일본발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창출에 의해 건강장수사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해 경제성장에 공헌하기 위한 의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 세계적 수준의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일본발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의 창출 등의 거점이 되는 임상연구 중심병원(가칭) 등을 창설
 -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의 체제 강화와 심사 등의 신속화·고도화 등을 촉진.
 - ⇒ 보험 상환가의 설정에 있어서 의료의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한 이노베이션의 평가 등 지속적인 검토 실시.

장애인 대책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인 시책의 충실에 대해서, 제도 간의 균열이 없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지역 이행 및 지역 생활의 지원 등에 대해서 검토.
- 장애기초연금의 가산과 장애인의 취로지원,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에 대한 충실도를 도모.

차세대를 담당할 어린이와 청년층의 육성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환경 정비, 교육의 질과 기회를 균등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 특히 생계가 곤란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방단독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급부의 전체상 및 비용추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 지방단독사업을 포함하여 재원 구성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기능 및 성격에 주목한 사회보장급부의 전체상을 정리.
- 사회보장급부비로는 향후 ILO 기준에 준거하여 「법령에 기준하여 사업 실시가 의무화된 개인에 귀속하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재원 구성에 관계없이 파악.
- 사회보장급부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① 사업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② 개인에 귀속하는 급부 이외의 급부에 유사한 사업, ③ 시설정비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 전체에 대해서 파악.

■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소비과세

소비세

소비세 수입은 별도로 법률에서 지정한 부분 이외에 매년 제도로써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급부 및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방침이다. 이 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비세 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는 예산 등에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1일까지 8%, 2015년 10월 1일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소비세의 세율구조에 대해서는 식료품 등에 대해서 경감 세율을 적용할 경우 고액 소득자 등의 부담 경감액이 커지는 점, 과세베이스가 크게 침식되는 점,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혁에서는 단일 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세 이외의 소비과세 등

주세, 담배세, 석유관련 제세 등에 대해서는 개별 간접세를 포함한 가격에 소비세가 과세되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룰을 고려하고, 정부 및 지방의 재정상황, 과세대상 품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세제 개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소득과세

일본의 소득세는 중견소득자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 이후 세율구조의 대폭적인 누진완화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1997년 이후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함과 동시에 소득 분포가 하방 이동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 구조가 변화하는 한편, 세율 구조의 누진성이 계속적으로 저하함에 따라,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계속해서 저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소비세율의 인상에 의해 세제 전체의 누진성이 더욱 저하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요구하는 등 소득재분배 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조에 추가적으로 과세소득 5,000만 엔 이상의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15년분의 소득세부터 적용).

법인과세

법인과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조 등을 유의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향상, 일본 내 입지의 확보 및 촉진, 고용과 국내 투자의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도 세제 개정에서 과세기준의 확대와 함께 법인세율을 4.5% 인하하기로 하였다(2012년도부터 적용 개시).

자산과세

1)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상속세 기초공제

	현 행	개 정 안
정액공제	5,000만 엔	3,000만 엔
법정상속인비례공제	1,000만 엔에 법정상속인 수를 곱한 금액	600만 엔에 법정상속인 수를 곱한 금액

②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

현 행	개 정 안
500만 엔에 법정상속인 수를 곱한 금액	500만 엔에 법정상속인(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상속개시 직전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로 제한) 수를 곱한 금액

③ 상속세 세율 구조

현 행		개 정 안	
금 액	세 율	금 액	세 율
1,000만 엔 이하	10%	1,000만 엔 이하	10%
3,000만 엔 이하	15%	3,000만 엔 이하	15%
5,000만 엔 이하	20%	5,000만 엔 이하	20%
1억 엔 이하	30%	1억 엔 이하	30%
3억 엔 이하	40%	2억 엔 이하	40%
3억 엔 초과	50%	3억 엔 이하	45%
		6억 엔 이하	50%
		6억 엔 초과	55%

2) 미성년자 공제 및 장애인 공제

① 미성년자공제

현 행	개 정 안
20세까지 1년에 6만 엔	20세까지 1년에 10만 엔

② 장애인공제

현 행	개 정 안
85세까지 1년에 6만 엔 (특별장애인 12만 엔)	85세까지 1년에 10만 엔 (특별장애인 20만 엔)

※상기 1) 및 2)의 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해서 적용.

3)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의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20세 이상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의 세율구조

현 행		개 정 안	
금 액	세 율	금 액	세 율
200만 엔 이하	10%	200만 엔 이하	10%
300만 엔 이하	15%	400만 엔 이하	15%
400만 엔 이하	20%	600만 엔 이하	20%
600만 엔 이하	30%	1,000만 엔 이하	30%
1,000만 엔 이하	40%	1,500만 엔 이하	40%
1,000만 엔 초과	50%	3,000만 엔 이하	45%
		4,500만 엔 이하	50%
		4,500만 엔 초과	55%

② 상기 ① 이외의 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의 세율 구조

현행		개정안	
금액	세율	금액	세율
200만 엔 이하	10%	200만 엔 이하	10%
300만 엔 이하	15%	300만 엔 이하	15%
400만 엔 이하	20%	400만 엔 이하	20%
600만 엔 이하	30%	600만 엔 이하	30%
1,000만 엔 이하	40%	1,000만 엔 이하	40%
1,000만 엔 초과	50%	1,500만 엔 이하	45%
		3,000만 엔 이하	50%
		3,000만 엔 초과	55%

4)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수증자의 범위에 20세 이상의 손자(현행 추정 상속인만)를 추가

② 증여자의 연령 요건을 60세 이상(현행 65세 이상)으로 완화

※상기 3) 및 4)의 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서 적용.

지방세제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방법인특별증여세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편재성이 작은 지방세 체계의 구축이 실시될 때까지의 조치」로 일체 개혁과 병행하여 근본적으로 개정한다.

기타

사회보장 및 세제관련 번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세제상의 대응에 대해서는 2012년 통상국

회에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마이 넘버법」의 정비법에 있어서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 ① 신고서 및 법정 조서 등 세무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에 그 제출자 및 일정한 자(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등, 법정 조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지불을 받는 자 등)와 관련된 번호(개인 번호 또는 법인번호, 이하 동일)를 추가한다.
- ② 법정 조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지불을 받는 자 등이 고지해야 될 사항으로 ‘번호’를 추가한다.
- ③ 고지를 받은 자가 본인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번호’를 추가함과 동시에 본인 확인 서류의 범위에 ‘번호카드’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의 복사’ 등을 추가한다.
- ④ 기타 소요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 맺음말

일본 정부와 여당의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야당에 대해 이번 개혁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민주당 및 공명당은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법안의 성립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국회 심의에서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때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혁안에 대한 찬부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전에 비해 소비세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계 부담이 예상 외로 증가할 경우 그 반응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소비세가 10% 인상되었을 때, 연간 수입이 500만 엔인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실질가처분소득은 31.4만 엔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의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부담 증가를 요구한 이번 개혁안에 의해 기초재정수지는 계획대로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서고, 사회보장의 재원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일까?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답은 ‘노’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채 잔고의 증가에 의해 이자관련 지출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을 목적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고장난 브레이크를 어떻게 수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KLI**